

#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 : 2018년 11월 15일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위험등급 정보 업데이트
- 관련 투자신탁 변경 반영 (법령 반영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b>(업데이트)</b>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서 전반	용어 통일	피투자펀드 등	외국 집합투자기구 등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<b>(업데이트)</b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마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등	<b>(업데이트)</b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. 투자제한  (2) 모투자신탁	관련 투자신탁 변경 반영	(가) 6. 라. 위 본문 (i)과 관련하여,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	(가) 6. 라. 위 본문 (i)과 관련하여,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 <b>별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</b> )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. 투자제한  (2) 모투자신탁	관련 투자신탁 변경 반영	(가) 6. 마. 위 본문 (ii)와 관련하여,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</u>	<b>(삭제)</b>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p>집합투자기구의            집합투자증권(같은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          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           운용하는 경우만            해당합니다)에 이 투자신탁           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           투자하는 경우</p>	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p> 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정보 업데이트	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	(업데이트)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(1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기재 명확화	<p>[총보수 및 비용] 표에 대한 주석</p> <p>※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등            결제비용            경상적·반복적으로            지출되는            비용(증권거래비용 제외)           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           통상적으로 상기           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          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          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.</p> <p>※ 증권거래비용은 이            투자신탁이           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           사항이 없습니다.</p> <p>※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          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          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           순자산            연평균잔액(보수·비용</p>	<p>[총보수 및 비용] 표에 대한 주석</p> <p>※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등            결제비용            경상적·반복적으로            지출되는            비용(증권거래비용 제외)           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           통상적으로 상기           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          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          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.  <b>다만, 종류형의 경우,           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           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            안분한 값과 각            종류(클래스) 단위에서           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           합산하여 산출합니다.</b></p> <p>※ 증권거래비용은 이            투자신탁이           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           사항이 없습니다.</p> <p>※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          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           보수와 각 종류(클래스)  <b>단위에서 발생한</b> 기타비용            총액을 순자산</p>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차감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  (...)	연평균잔액(보수·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  (...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<u>(업데이트)</u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<u>(업데이트)</u>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정보 업데이트	요약 재무내용 등	<u>(업데이트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라. 운용자산 규모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<u>(업데이트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간이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 : 2018년 11월 15일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위험등급 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<b>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</b>			
보수 비용 등	정보 업데이트 기재 명확화	보수 비용 정보 등 <b>[총보수 및 비용]</b> 표에 대한 주식 (...) ※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·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제외)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. ※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※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(보수·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 (...)	<b>(업데이트)</b> <b>[총보수 및 비용]</b> 표에 대한 주식 (...) ※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·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제외)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. <u>다만, 종류형의 경우,</u> <u>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</u> <u>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</u> <u>안분한 값과 각</u> <u>종류(클래스) 단위에서</u> <u>발생하는 기타비용을</u> <u>합산하여 산출합니다.</u> ※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※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<u>각 종류(클래스)</u> <u>단위에서 발생한</u>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(보수·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 (...)
<b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b>			
(1) 투자전략	정보 업데이트	운용 현황 등	<b>(업데이트)</b>
4. 운용전문인력			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(1) 투자전략  5. 투자실적 추이	정보 업데이트	연도별 수익률 추이	(업데이트)
(2)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정보 업데이트	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	(업데이트)
(2)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3. 위험관리  나. 환위험 관리 전략	용어 통일	피투자펀드 등	외국 집합투자기구 등
<b>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</b>			
(4) 매입관련 유의사항	과도한 매매의 제한에 대한 유의 문구 추가	-	<p>(추가)</p> <p>(4) 매입관련 유의사항</p> <p>과도한 매매의 제한: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.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,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90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,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</p>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	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